

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(재일 2003-4)

일부개정예규안

1. 개정이유

- 사무분담 변경으로 인한 심리의 단절과 중복을 최소화하고,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사건처리를 통해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관의 최소 사무분담 기간을 장기화 함
- 「법원장 및 지원장의 재판업무 담당에 관한 지침」 폐지에 따라 법원장 및 지원장이 재판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

2. 주요내용

- 재판장인 법관의 최소 사무분담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(안 제4조제4항제1호)
- 재판장이 아닌 법관의 최소 사무분담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. 다만, 해당 법관을 재판장으로 보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(안 제4조제4항제2호)
- 법원장 및 지원장은 사법행정사무 이외에 적정한 범위의 법정재판업무를 담당함을 원칙으로 함. 다만, 사법행정사무와 대외업무의 부담을 고려하여 비법정재판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의7 신설)

3.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(재일 2003-4) 일부개정예규안

붙임과 같음

4. 신 · 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(재일 2003-4)

일부개정예규안

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(재일 2003-4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4항제1호 중 “2년” 을 “3년” 으로 한다.

제4조제4항제2호 중 “1년” 을 “2년(다만, 해당 법관을 재판장으로 보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)” 으로 한다.

제4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7(법원장 등의 재판업무 담당)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사법행정사무 이외에 적정한 범위의 법정재판업무(민사·형사·가사·행정사건 등 ‘법정에서 구두변론·심문·증거조사절차 등을 거쳐 처리하는 사건’에 대한 재판업무)를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사법행정사무와 대외업무의 부담을 고려하여 비법정재판업무(조정사건,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, 재정결정부 재판사무 등 ‘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서면심리방식이나 비형식적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는 사건’에 대한 재판업무)를 담당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.

제2조(사무분담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예규 시행 전에 확정된 사무분담에 대해서는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3. (생략)

<신설>

다)

3. (현행과 같음)

제4조의7(법원장 등의 재판업무

담당)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사법행정사무 이외에 적정한 범위의 법정재판업무(민사·형사·가사·행정사건 등 ‘법정에서 구두변론·심문·증거조사절차 등을 거쳐 처리하는 사건’에 대한 재판업무)를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사법행정사무와 대외업무의 부담을 고려하여 비법정재판업무(조정사건,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, 재정결정부 재판사무 등 ‘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서면심리방식이나 비형식적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는 사건’에 대한 재판업무)를 담당할 수 있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심의관실	
연 락 처	(02) 3480-1245